

습니다.

- ②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제 3 자에게 송계하고자 할 경우,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송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송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③ 송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송계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- ④ 제 3 항의 송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. 다만, 송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송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33 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

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